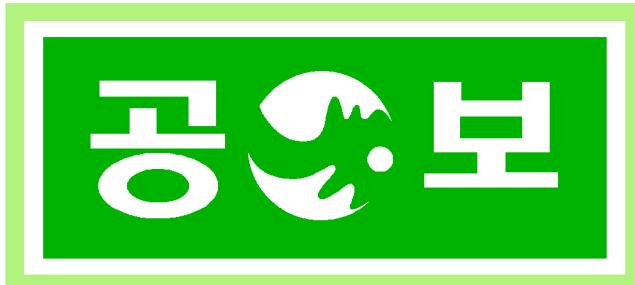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판 의 장



제 969 호 2015. 9. 21. (월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187호[도로명주소 고시] 2
◦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188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4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-817호[대부업체 소재지 확인 공고] 5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계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◦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◦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	-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6 행정7126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- 187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9월 2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음달길 84(천곡동)외 10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*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자적과 (☎052 241 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9. 21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증진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지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친곡동 858	울산광역시 북구 읍밀길 84(친곡동)	2015-09-21 기존지연마을인 읍밀마을에 위치하여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2	울산광역시 북구 중신동 1270-1	울산광역시 북구 중신산업1길 19(중신동)	2015-09-21 중신산업단지내부도로로 명을 부여하였다.	2015-02-02	
3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68-3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산업2길 1(중산동)	2015-09-21 중산산업단지내부도로로 명을 부여하였다.	2015-02-02	
4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42-10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4-4(매곡동)	2015-09-21 법정동이름을 사용하여 매곡로 인근현위치성을 고려해서도로명부여하였다.	2009-04-08	
5	울산광역시 북구 친곡동 1121-2	울산광역시 북구 턱곡길 95-4(친곡동)	2015-09-21 대전시 명인탁곡명칭을 사용해서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6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09-7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1길 24(연암동)	2015-09-21 그러나 출입용미어긋나 위에서 설수라운 편적이 수놓은 듯피에나쁜연암이란 이름을 끊어버렸다. 이를 이드로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7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42-29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4-2(매곡동)	2015-09-21 법정동이름을 사용하여 매곡로 인근현위치성을 고려해서도로명부여하였다.	2009-04-08	
8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555-13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104-20(호계동)	2015-09-21 호계사장이 위치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.	2009-08-20	
9	울산광역시 북구 진창광촌자구 189, 101	울산광역시 북구 번영로 646	2015-09-21 중남구를 연결하여 당시 발전기기하는 대표적인 도로로 명부여하였다.	2001-03-22	
10	울산광역시 북구 흐로동 1010, 1010-1, 1010-2	울산광역시 북구 모들화산산업로 14((흐로동))	2015-09-21 모들화산산업단지내에 조성된 도로로 명부여하였다.	2010-04-27	지번상 초록동 60-3-1010 • 흐로동 110-1C10-1,2
11	울산광역시 북구 친곡동 874-1	울산광역시 북구 읍밀길 77(친곡동)	2015-09-21 기존지연마을인 읍밀마을에 위치하여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- 188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9월 2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울산 북구 음달길 77(천곡동)	2015. 9. 21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9. 21.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- 817 호

대부업체 소재지 확인 공고

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 『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“대부업법”이라한다.) 제13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9월 2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공고의 명칭 :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
2. 공 고 기 간 : 2015. 9. 21 ~ 2015. 10. 20(30일간)
3. 소재확인 대상업체 내역 :

등록번호	상호	대표자	소재지
2015-울산북구-00001	신속대부	신동화	울산광역시 북구 상방6길 12, 301호(연암동)

4. 공고내용

- 해당 대부업자는 공고기간 만료 전까지 북구청 창조경제과로 소재 확인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의거 등록이 취소되며,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이 제한됩니다.

* 문의 및 소재확인 통지처 : 창조경제과 (052-241-7705)

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(연암동) 북구청 6층